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4.11.4)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의 안 번	건 명	페이지
2014 - 74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
2014 - 7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4 - 76	거창군 학급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5
2014 - 77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8

<의안번호 제2014 - 74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4. 10.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4. 10.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4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평가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나. 평가대상 및 방법, 횟수를 정함(안 제5조)
 - 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
 - 방법/횟수: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연 1회 이상
- 다.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평가 실시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
 -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 대행 가능

마. 현장평가단 구성(안 제9조)

-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5명 이상 구성

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안 제11조·제12조)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 이행이 부진한 경우 보완조치 및 필요한 조치 가능

사. 세부기준(안 제14조)

-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4 - 7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0. 21.
- 나. 제출자 : 표주숙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4. 10.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4

2. 개정이유

-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불편을 해소하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에 대비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 “부르미택시”,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용어 정의 (안 제2조)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을 규정 (안 제3조)
- 부르미택시 비용의 신청 및 지원결정 규정 (안 제4조, 제5조)
 - 해당마을 ~ 읍소재지: 1인당 농어촌버스요금 부담
 - 해당마을 ~ 면소재지: 1대당 100원 부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용권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 방안과 비교할 때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4 - 76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0.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0.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4

2. 민간위탁 이유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연 왕

- 시 설 명: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규 모: 연면적 1,345㎡ (지상2층)
 - 1층(1,054㎡):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291㎡):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나. 위탁사무

- 시 설: 학교급식지원센터 1, 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38개교(10,000명)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

다. 그간의 추진사항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 지원사업 선정: 2010. 1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0.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2011. 11. 2
-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동의(안) 가결: 2012.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선정: 2012. 4
(거창원협)
- 23개교(4,025명) 식자재 조달대행(초등): 2012. 5 ~ 2012. 8
- 36개교 식자재 조달대행(중·고등 추가): 2012. 9 ~ 2013. 2
- 38개교(10,000명) 식자재 조달대행(유치원 추가): 2013. 1~

라. 운영계획

- 재 위탁 운영
 - 수탁기관: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대표 윤수현)
 - 위탁기간: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 단 2016년 이후 수탁업체는 2015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
- 위탁운영 방식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 공급업체 선정, 이익금의 분배조건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협약서 작성 및 공증)
 -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대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실무 일체 위탁

마. 소요예산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간위탁으로서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위탁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년 동안 재위탁 하려는 사안으로,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4 - 77호>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0.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0. 16
- 라. 산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4

2. 민간위탁 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근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가. 연 왕

- 시 설 명: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규 모
- 부 지: 36,376㎡
- 연 면 적 ▮ 당초: 8,219㎡(선별 3,499㎡, 저장 1,780㎡(1,440톤) / 기타 2,940㎡)
 └ 보완: 2,874㎡(저장 1,467㎡, 선별 1,171㎡, 기타 236㎡)
- 시설내역: 선별기(1일 50톤 / 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나. 위탁사무

- 시설: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다. 운영계획

- 재위탁 운영
 - 수탁기관: (주)NH유통 (대표 신인재)
 - 위탁기간: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4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함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라. 소요예산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NH유통에서 지난 5년(2009년~2014년)간 위탁 운영한 서북부 경남 거점APC의 위탁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2014. 10. 17일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 재위탁으로 심의된 사안으로 지금까지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주)NH에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